

'99년 9월 중 공정거래쉬탁교육 국제계약관련업체 및 사업자단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9월 9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3 회의실에서 국제계약관련업체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국제계약관련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 1과 이필현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경쟁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국제계약제도의 의의, 심사대상 및 절차 등 국제계약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의 제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4일(화) 예의도에 위치한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자단체 공정거래교육에서는 사업자단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 신영호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제도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협회의 공정거래교육에 대한 문의는

기획부(☎ (02)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화) '99년 8 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분쟁사안에 대해 본 협회의 신무성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과 분쟁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제2차 조정회의 상정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정회의 상정안건

- (주)해주산업건설의 선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부당한 대물변제에 대한 분쟁 건
 - ☞ (주)해주산업건설은 조정안대로 어음할인료 5,004,881원을 지급하고 조정 수락
- (주)창보종합건설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부당한 대물변제에 대한 분쟁 건
 - ☞ (주)창보종합건설은 조정안대로 어음할인료 24,794천원 및 자재사용료 10,206천원을 지급하고 조정 수락
- 평림종합건설(주)의 추가공사물량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 평림종합건설(주)는 조정안대로 추가공사물량 정산금 3,300천원을 지급하고 조정 수락

제2차 조정회의 상정안건(합의)

- (주)대교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 (주)대교건설은 하도급대금 4748천원 및 자연이자 234천원을 지급하고 양당사자 합의
- (주)오브제컴퍼니의 부당반품에 대한 분쟁 건
 - ☞ (주)오브제컴퍼니의 상설매장에서 반품제품의 판매(재고 소진)를 하기로 양당사자간 합의
- (주)인스필의 부당감액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 (주)인스필은 부당감액금 16,574천원과 미지급대금 8,689천원을 지급하고 양당사자 합의
- (주)대한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 (주)대한은 하도급대금 2,200천원을 지급하고 양당사자 합의
- 대정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건
 - ☞ 대정건설(주)는 하도급대금 5,071천원을 지급하고 양당사간 합의

< 분쟁사안 접수현황 >

1999년 9월 21일 현재

구 분	접수건수	접수현황			월별접수현황		
		제조	건설	계	9월	8월	7월
조정의뢰	10	-	10	10	4	3	3
직접접수	12	4	8	12	2	10	-
계	22	4	18	22	6	13	3

< 분쟁사안 처리현황 >

1999년 9월 21일 현재

구 분	접수건수	처리현황				
		조정성립	합의성립	조정불성립	조사중	반려
조정의뢰	11	3	3	-	5	-
직접접수	16	-	2	-	10	4
계	27	3	5	-	15	4

협회 명칭변경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안내

현행 본 협회의 명칭이 협회의 기능이나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호칭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회원총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99년 6월 11일부로 협회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The Korea Fair Trade Association)로 변경하고 더욱 새롭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협회 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성있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한국공정거래협회 주요 사업

- (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운용방향을 포함한 업종별·분야별 교육 및 연수
-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활동과 심결사례, 주요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학계 및 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정책제언 및 해외 경쟁정책 동향 등을 수록한 전문지인 월간「공정경쟁」발간·배포
- (3) 「97공정거래관련법규집」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지침 내용 등을 보완·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발간
-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해설집 발간·배포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보완 작성
- (5)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제도 운영내용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공정거래 정책당국과 민간업계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정거래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을 자율 조정
- (7) 회원사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상담을 지속 실시